

2020 - 3197

() () (),
()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-11호(2010.01.21.)로 결정된 「북촌지구단위계획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(북촌지구단위계획 재정비)결정(변경)(안)과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(안)에 대하여 2020년 제12차 서울특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(2020.09.09.)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, 「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9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7조 및 동조례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열람공고 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서울시청 한옥건축자산과와 종로구 건축과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0년 11월 26일
서울특별시 장

가. 열람기간 :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

나. 열람장소 : 서울시청 한옥건축자산과(☎2133-5573) / 종로구 건축과(☎2148-2812)

다. 열람내용

① 도시관리계획(북촌지구단위계획 재정비)결정(변경)(안)

1)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: 변경없음

구 분	구역명	위 치	면 적(㎡)			비고
			기정	변경	변경후	
기정	북촌 지구단위 계획구역	종로구 북촌 (가회동, 계동, 원서동, 안국동, 재동, 화동, 사간동, 소격동, 송현동, 팔판동, 삼청동) 일대	1,128,372.7	-	1,128,372.7	최초결정일 :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200호 (2008.6.12.)

- 2)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 : 생략 (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)
- 3) 대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 : 생략 (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)
- 4)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 : 생략 (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)
- 5)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(변경) : 생략 (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)

②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(안)

1) 건축자산진흥구역 결정(변경)조서 : 신설

구 분	구역명	위 치	면 적(㎡)			비고
			기정	변경	변경후	
신설	북촌 건축자산 진흥구역	종로구 북촌 (가회동, 계동, 원서동, 안국동, 재동, 화동, 사간동, 소격동, 송현동, 팔판동, 삼청동) 일대	-	1,128,372.7	1,128,372.7	북촌지구단위계획구역과 동일함

2) 건축자산진흥구역 관리계획(안) : 생략 (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)

라. 기타사항

-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「도시관리계획(북촌지구단위계획 재정비) 결정(변경)(안),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(안)」 도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청 한옥건축자산과(☎2133-5573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2020 - 3198

「도로법」 제77조(차량의 운행제한) 위반자들에게 「질서위반행위 규제법」 제17조, 「지방세징수법」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지서 및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대상자와 연락도 되지 않아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 및 「지방세기본법」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0년 11월 26일

서울특별시

1. 건 명: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
2. 근 거: 「도로법」 제117조 및 「동법 시행령」 제105조, 「질서위반행위 규제법」 제17조, 「지방세징수법」 제32조, 「지방세기본법」 제33조,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